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75호 2020. 10. 13.(화)

조 례

- 남해군 조례 제2481호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
- 남해군 조례 제2482호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

공 고

- 남해군 공고 제2020-1203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10
- 남해군 공고 제2020-1209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7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8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4
- 남해군 공고 제2020-1210호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1
- 남해군 공고 제2020-1212호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74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481호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0월 1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등)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 (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군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이하 “통합기금운용계획”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종전의 「남해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남해군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지체 없이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해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남해군 재정안정화기금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제4조제2항 중 “관리·운용한다”를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세출로 한다”를 “세출로 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③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예치·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제3조제2항 중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를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⑤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남해군 재무회계규칙」”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① 기금은 군수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운용·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⑥ 남해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비로”를 “경비로 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⑦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운용·관리하여야 한다”를 “운용·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으로 한다.

⑧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제5조제2항 중 “예치·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치·관리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⑪ 남해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충당한다”를 “충당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⑫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관리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 중 “「남해군 재무회계규칙」”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⑬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관리·운용한다”를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 중 “「남해군 재무회계규칙」”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남해군 조례 제2482호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0월 1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스카이워크” 를 “전망대 체험시설”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을 “전망대 체험시설” 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을 “전망대 체험시설” 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망대 체험시설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중 “시설 중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을 “체험시설” 로, “별표1” 을 “별표” 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을 “전망대 체험시설” 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스카이워크” 를 “전망대 체험 시설”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신질환자 및 고소공포증” 을 “고소공포증”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을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스카이워크 그네” 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망대 체험시설 (제9조제1항, 제10조, 제13조제3호 관련)

1. 물미해안 전망대
가.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대인	소인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개 인	3,000	2,000
	단 체	2,000	1,000

- 1) 소 인 : 만7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 2) 대 인 : 만19세 이상
- 3) 단 체 : 유료입장객 중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나. 운영시간 : 09:00 ~ 18:00

2. 설리 스카이워크
가.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대인	소인	비고
스카이워크	2,000	1,000	
스카이워크 그네	6,000	4,000	스카이워크 포함

- 1) 소 인 : 만7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 2) 대 인 : 만19세 이상

나. 운영시간 : 09:00 ~ 21:00(스카이워크 그네는 18:00까지)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1203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남해군수(삼동면장)	주소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소하천명	물건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11-1번지 외 4필지		
	면적	72m 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²
	기간	2020. 10. 1. ~ 영구(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개월)		
	목적 및 사유	물건천 노후교량 수해복구 공사		

남해군 공고 제2020-1209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남해군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청사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시기구로 청사 신축추진단을 신설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사신축추진단 설치(안 제3조의2)

- 청사신축추진단 분장사무는 청사행정, 청사건축에 관한 사항 관장

나. 재무과 청사신축팀 삭제(안 제5조제2항제5호)

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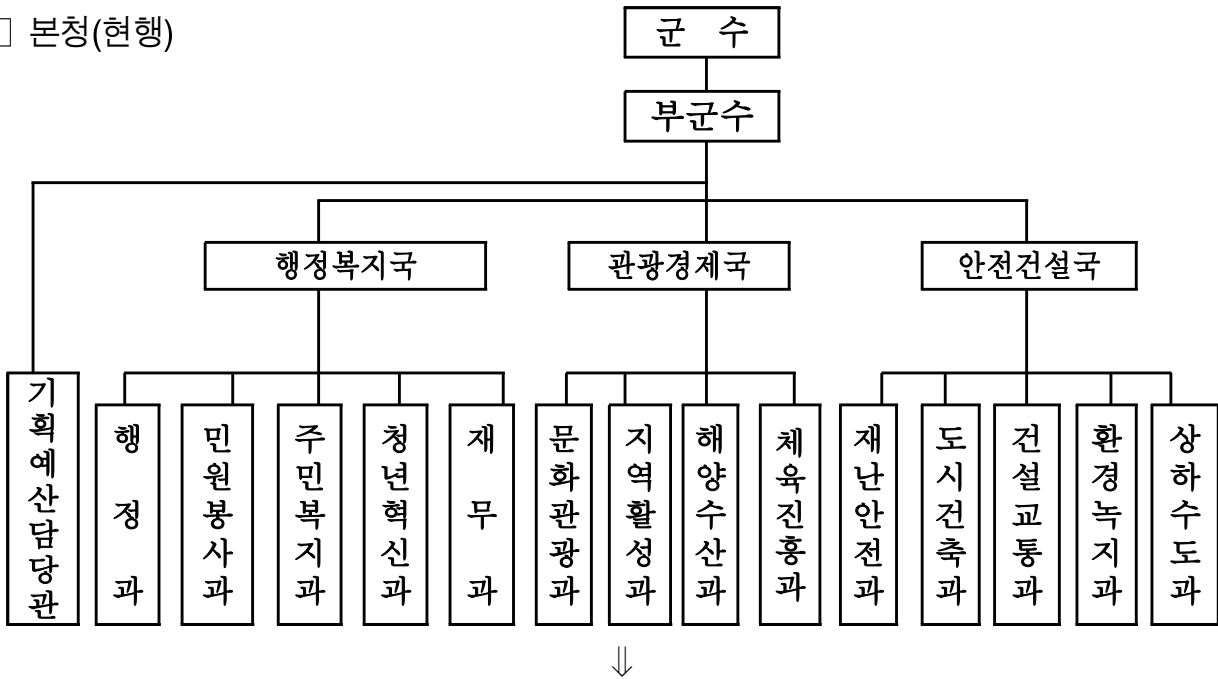
- 조문 제목 수정(안 제2조) 및 사업소 폐지에 따른 별표 2호 서식 삭제

라. 조직개편 전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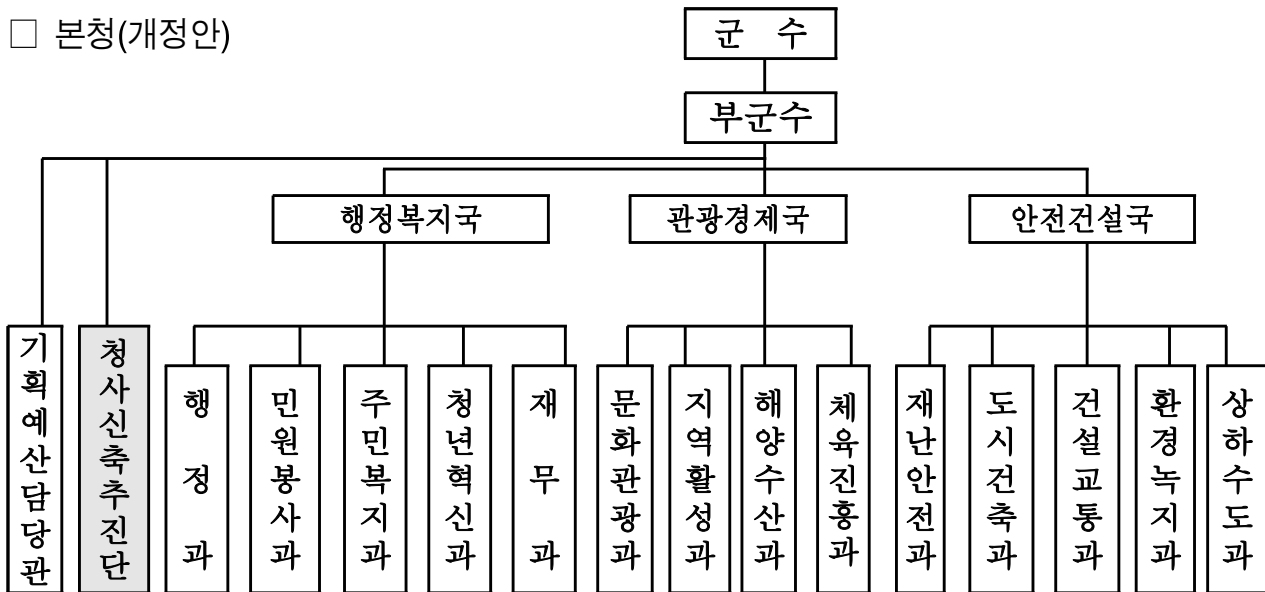
- 당초 : 3국 1관 14과 2직속기관 1의회 1읍9면(140팀)

- 변경 : 3국 1관 1단 14과 2직속기관 1의회 1읍9면(141팀)

□ 본청(현행)



□ 본청(개정안)



※ 직속기관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번지) 남해군청 행정과(전화 860-3113,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860-3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Empty space for opinion content]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을 “(국장, 담당관 및 단장,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 을 “국장·담당관·단장·과장의 직급과 담당관·단장·과장” 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한시기구) ① 부군수 밑에 한시기구로 청사신축추진단을 둔다.

② 청사신축추진단의 분장사무는 청사행정, 청사건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재산세, 청사신축” 을 “재산세” 로 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청사신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장 및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①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 본청의 <u>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사무분장</u>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생략)</p> <p><신설></p>	<p>제2조(국장, 담당관 및 단장,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①----- ---- 국장·담당관·단장·과장의 직급과 담당관·단장·과장-----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한시기구) ① 부군수 밑에 한시기구로 청사신축추진단을 둔다. ② 청사신축추진단의 분장사무는 청사행정, 청사건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p>
<p>제5조(행정복지국) ① (생략)</p> <p>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p> <p>1. ~ 4. (생략)</p> <p>5. 부과, 경리, 재산관리, 세입관리, <u>재산세</u>, 청사신축에 관한 사항</p>	<p>제5조(행정복지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재산세</u>-----</p>

남해군 공고 제2020-1209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2. 개정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시기구인 청사신축추진단 신설
- 나. 2020년도 기준인건비 국가(지역) 현안수요 반영 및 행정수요 신규 증대분야 인력 보강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수요를 반영한 공무원 정원 조정
- 다. 기존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직급별 인원 및 비율 조정

3.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조정(조례안 제2조)
 - 총정원 643명 ⇒ 657명(증 14명)
 - 집행기관의 정원 : 630명 ⇒ 644명(증 14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조례안 제4조 별표3)

구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읍	면
현행	643	354	13	122	19	135
개정	657	367	13	123	19	135
증감	증14	증13	0	증1	0	0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번지) 남해군청 행정과(전화 860-3113,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860-3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Empty space for opinion content]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43명”을 “65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30명”을 “644명”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한시정원) 제4조의 정원 중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등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제2조에 따른 정원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 중 5명, 별표 3 중 5급 1명, 6급 이하 4명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6% 이내	26% 이내	32% 이내	27% 이내	7% 이상	1% 이내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	100% 이내	10% 이내	90%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 당	7급 상 당	8급 상 당	9급 상 당
비 율	-	100% 이내	-	-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개정 2019. 12. 12>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총 계	657					
정무직 계	1					
일반직 계	627					
4급	4	4				
5급	34	16	3	1	4	10
6급이하 소계	588					
전문경력관	1					
별정직	1					
기록연구사	1					
농촌지도사	27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등(제6조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 (명)	존속기한	비고
		직종	직급			
총 계				5		
본 청	청사신축추진단	일반직	5급	1	2023.12.31	
본 청	청사신축추진단	일반직	6급 이하	4	2023.12.3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643명</u>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30명</u></p> <p>2.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657명</u>----- -----.</p> <p>1. ----- <u>644명</u></p> <p>2. (현행과 같음)</p> <p><u>제6조(한시정원) 제4조의 정원 중 한시정 원의 직급별 정원 등은 별표 4와 같다.</u></p>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현 행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직정력관	정정력관	
비율	1% 이내	6%	25%	32%	26%	9%	1%	1%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상	이내	이내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개 정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직정력관	정정력관	
비율	1% 이내	6%	26%	32%	27%	7%	1%	1%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상	이내	이내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	100% 이내	10% 이내	90%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	100% 이내	-	-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직급별 기관별		현 행					개 정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읍·면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읍·면					
총계	643	1	4	33	4	613	1	4	34	4	627	1	4	34	4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613					613					613					
4급	4		4			4		4			4					
5급	33		15	3	1	33		16	3	1	34					
6급이하 소계	575					575					588					
전문경력관	1					1					1					
별정직	1					1					1					
기록연구사	1					1					1					
농촌지도사	27					27					27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등(제6조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 (명)	존속기한	비고
		직종	직급			
총 계				5		
본 청	청사신축추진단	일반 직	5급	1	2023.12.31	
본 청	청사신축추진단	일반 직	6급 이하	4	2023.12.31	

남해군 공고 제2020-1209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가. 청사신축추진단 설치에 따른 단장 직급 및 사무분장을 정함
 - 나. 면장 및 부면장 복수 직렬 조정(이동면, 삼동면, 남면)
3. 주요내용
 - 가. 청사신축추진단 설치에 따른 단장 직급 신설(안제3조제5호)
 - 나. 팀 신설 및 사무분장 등 정비(안 제4조 별표 1)
 - 다. 읍면행정복지센터 면장 및 부면장 복수 직렬 정비(안 제12조2호, 제13조제2항 2호)
4. 의견제출
 -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번지) 남해군청 행정과(전화 860-3113,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860-3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담당관”을 “담당관 및 단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을 “(국장·담당관·단장·과장 등의 직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장”을 “단장, 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청사신축추진단 : 청사신축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의 제목 “(담당관·과장 등의 사무분장)”을 “(담당관·단장·과장 등의 사무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단장·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지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지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농업주사”를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시설주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시설주사”를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농업주사”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제5호의 신설 규정에 따른 청사신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직무) ① <u>담당관</u>은 부군수를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p> <p>② (생 략)</p>	<p>제2조(직무) ① <u>담당관 및 단장</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u>국장 · 담당관 · 과장 등의 직급</u>) 본청의 국장, 담당관, <u>과장</u>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p> <p>1. ~ 4. (생 략)</p> <p><신 설></p>	<p>제3조(<u>국장 · 담당관 · 단장 · 과장 등의 직급</u>)----- ----- 단장, 과장-----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청사신축추진단</u> : <u>청사신축추진단장</u>은 <u>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u>으로 보한다.</p>
<p>제4조(<u>담당관 · 과장 등의 사무분장</u>) <u>담당관 · 과장</u>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p>	<p>제4조(<u>담당관 · 단장 · 과장 등의 사무분장</u>) <u>담당관 · 단장 · 과장</u>----- --.</p>
<p>제12조(읍 · 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 · 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이동면장은 <u>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u> 또는 <u>지방시설사무관</u>으로 보한다.</p> <p>3. (생 략)</p> <p>4. 삼동면장은 <u>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u> 또는 <u>지방해양수산사무관</u>으로 보한다.</p> <p>5. (생 략)</p>	<p>제12조(읍 · 면장의 직급)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u> ----- --.</p> <p>3. (현행과 같음)</p> <p>4. ----- <u>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u> ----- -----.</p> <p>5.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6. 남면장은 <u>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u> 또는 <u>지방시설사무관</u>으로 보한다.</p> <p>7. ~ 10. (생 략)</p> <p>제13조(부읍·면장) ① (생 략)</p> <p>② 부읍장·부면장은 총무업무를 겸임하며, 직급 및 직렬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이동면부면장은 <u>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농업주사</u> 또는 <u>지방해양수산주사</u>로 보한다.</p> <p>3. ~ 5. (생 략)</p> <p>6. 남면부면장은 <u>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시설주사</u> 또는 <u>지방해양수산주사</u>로 보한다.</p> <p>7. ~ 10. (생 략)</p>	<p>6. ----- <u>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u> ----- -----.</p> <p>7. ~ 10. (현행과 같음)</p> <p>제13조(부읍·면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시설주사</u> ----- -----.</p> <p>3. ~ 5. (현행과 같음)</p> <p>6. ----- <u>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농업주사</u> ----- -----.</p> <p>7. ~ 10. (현행과 같음)</p>

군 본청 사무분장표(제3조 관련)

<청사신축추진단>

담 당 사 무	비고
① 청사행정예 관한 사항	
1. 보상협의(토지수용, 이주대책), 지장물 철거 2. 청사주변 종합개발방안 마련 3. 청사신축추진위원회 운영 4. 신청사 배치계획 및 공간활용 방안 마련 5. 스마트·ICT청사 계획 수립 6. 신청사 운영 및 이전계획 수립 7. 청사신축특별회계 관리 8. 현 청사 활용방안 마련 9. 백서제작, 신축관련 자료수집, 아이디어 공모,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② 청사건축예 관한 사항	
1.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 2. 기본계획 수립, 건설사업 관리용역 3. 지장물 철거 4. 문화재 시·발굴 및 음성정비 5.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6.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7. 신재생에너지·친환경공법 도입 8. 청사신축 시공, 공사 감독 9. 남해읍성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10. 느티나무광장 도시공원 추진	

군 본청 사무분장표(제3조 관련)

<재무과>

담 당 사 무	비고
①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1. 과 소관 업무 종합 기획 · 조정 2. 세정의 전문성, 효율성 향상 대책 추진 3. 지방세 조정 및 부과 4. 국세조정 및 부과 5. 은닉 세원조사 및 발굴 6. 군세심의위원회 운영 7.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8. 지방세 구제업무 9. 지방소득세 부과 등에 관한 업무 10. 지방세수 목표액 관리 및 세수추계 11.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12. 자치법규정비 13. 지방세정 종합 평가 14. 그 밖의 세무업무에 관한 사항	
② 경리·계약·용도 및 복식부기운영에 관한 사항 1. 세출예산지출 및 경리 2. 국·도비 일상경비 관리 3. 세출결산 4.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5. 세출일계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정리 6. 공사계약 투명성 확보 대책 추진 7. 공사·용역 물품구매의 계약 8. 공공사업의 조기발주 및 시설공사 하자검사 총괄관리 9. 재정연감 작성 10. 회계 관련 법규 및 제도개선 추진 11. 복식부기 회계 기본계획 수립 운영 12.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운영 13. 복식부기 세입·세출(일반·특별·기금회계 포함) 자료 입력관리 14. 복식부기 수입과 비용에 관한사항 결산 15. 우리군 자산, 부채실사 및 평가 16. 재무제표작성 및 재정운영상태 보고 17. 복식부기 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재무과>

담 당 사 무	비고
18. 그 밖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속하는 사항	
③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 공유재산 종합관리 2.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 3.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4. 청사, 관사 및 건물 관리 5. 총괄재산관리관 소관재산의 취득 및 관리 6. 물품출납, 보관, 처분에 관한사항 7. 정기재물조사 8. 공용차량관리 및 운영지도 9. 재정공제 등록 10. 청사 에너지 절약 11. 공유재산 실태조사 12.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13. 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 14.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지방세 징수와 세외수입징수에 관한 사항	
1. 지방세(국세) 수납 2. 세입결산, 세입일계표, 현계표처리 3. 체납 지방세징수 특별대책 추진 4. 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분 5. 과오납금 정리 6. 수입증지 출납관리 7. 자금관리 및 배정 8. 군금고 계약·관리감독 9. 세외수입 징수·확충에 관한 사항 10. 은닉세외수입원 조사 발굴 11. 세외수입 효율조정 지도 12. 기부금품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에 관한 사항	
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1. 개별주택 가격조사 2. 개별주택 공시가격 심의 및 이의신청 처리 3. 개별주택 가격 결정 및 공시	

<재무과>

담 당 사 무	비고
4. 재산세 과세대상 관리	
5. 재산세 조정 및 부과	
6.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	
7.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세무조사	
9. 그 밖의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군 본청 사무분장표(제3조 관련)

<도시건축과>

담 당 사 무	비고
①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1. 도시기본계획 수립(변경)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3. 용도지역,지구의 결정(변경) 4. 지구단위계획 및 군계획시설의 결정(변경) 5.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6.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추진 7.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신설) 8. 군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운영 9.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0. 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2.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LURIS) 운영 관리 13. 도시계획 정보시스템(UPIS) 구축 및 운영 14.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용도지역지구도 관리 및 운영 1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16. 도시계획시설 유지 관리 17.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공 및 감독 18.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지보상 및 보존등기 19.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20. 온천업무에 관한 사항 21. 도시통계 22. 그 밖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②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1.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총괄·조정·관리·지원 2. 도시재생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 조사·관리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4. 도시재생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5. 도시재생추진단, 도시재생행정협의회,도시재생추진협의회,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6. 도시재생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구성·운영 7.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8. 도시재생사업 보상협의 9.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 및 타부서 연계 사업 협의 10. 소규모도시재생사업 추진 11. 도시재생뉴딜 스타트업사업 추진 12.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평가·점검 13. 총괄관리자 사업에 의한 공모사업 추진 14. 혁신지구계획 수립 15.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원	

<도시건축과>

담 당 사 무	비고
<p>③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경관계획 수립(변경) 2.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3. 경관개선 시범사업 4. 공공디자인조례, 경관조례 개정 5. 공공디자인위원회, 경관위원회 운영관리 6.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의 7.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연장 8. 불법광고물 단속, 주민수거보상제 운영 9. 옥외광고물 통계자료 10. 지정게시대 신설, 유지관리 11. 간판정비사업 및 거리미관 정비사업 12.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관리 13. 옥외광고물 조례, 옥외광고기금 조례 운영 14. 광고업종사자 및 광고협회 지도,감독 15.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16. 저소득층 주거복지지원(주거급여, 주택개보수 지원) 17. 자전거 이용 시설물 관리 18. 경관관련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심의 19. 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 심의 	
<p>④ 공공건축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건축 관련 조례 제·개정 2.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3.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4.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5. 군 발주 건축분야 공공건축물 설계(용역)심사, 공사감독, 준공검사(시설직 없는 부서에 한함) 6. 남해 생활SOC복합화 꿈나눔센터 건립사업 7.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8. 공공임대주택 사업 9.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10. 마을회관 건축지원 업무 11. 옥상녹화사업 12. 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관리 13. 승강기 관리업무 14.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도시건축과>

담 당 사 무	비고
⑤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	
1.건축허가(신고)	
2.건축물 착공신고	
3.건축물 사용승인처리	
4.건축 민원 상담 및 현장조사	
5.건축복합민원 실무 심의회 개최	
6.건축물 대수선 허가 및 신고	
7.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8.건축위원회 운영 및 관리	
9.건축위원회 심의	
10.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 심의	
11.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자 지도 관리	
12.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관리)	
13.공용건축물 협의 처리	
14.건축물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15.공사감리자 지정 및 관리	
16.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17.건축지도원 운용 및 관리	
18.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신고 및 현황관리	
19.공사중 현장지도 및 현장관리인 배치 점검	
20.건축사 관리 및 위법보고	
21.공사감리자 지정 및 관리	
22.건축물 철거신고	
23.공작물 축조신고	
24.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5.가설건축물 관리 및 존치기간 연장 수리	
26.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27.건축물대장 생성,말소,표시변경,정정,분리·결합 신청	
28.건축물 부존재증명서 발급	
29.건축물대장 말소	
30.건축물 등기축탁(등기소 연계)	
31.소유권 변동사항 정리(등기소 연계)	
32.건축 행정시스템 운영 및 관리	
33.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4.진정,고충,건의민원 해결	
35.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처리	
36.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37.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관리	
38.건축분쟁전문 위원회 운영	
39.건축조례 개정 및 운용	
40.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리	
41.건축허가 취소 청문 개최	

<도시건축과>

담 당 사 무	비고
42.장기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43.건축 의제 처리 담당자 및 건축관계자 교육 44.건축분야 특수시책 업무 45.건축·주택 통계 46.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⑥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	
1.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2. 농지전용협의 3. 농지전용(타용도일시사용허가) 4.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납부지도 5.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6. 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7. 농지관련 민원 및 진정처리 8. 농지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9. 농지관련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0. 농지관련 인허가 사항 지도·단속 11. 산지전용허가(협의) 및 신고 12. 기타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 1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지도 1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15. 산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16. 산지관련 민원 및 진정처리 17. 산지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8. 산지관련 법률 등의 위반자 과태료 부과 19. 산지관련 인허가 사항 지도·단속 20. 개발행위 허가·협의 21. 개발행위 불법지도·단속 22. 개발행위 민원 및 진정처리 23. 개발행위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24.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25. 개발행위 인허가 사항 지도·단속 26. 개발행위 분할 및 민원상담	

<도시건축과>

담 당 사 무	비고
⑦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1. 공동주택 사업승인 2. 대지조성 사업승인 3. 공동주택 행위허가 4.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운영 5. 위법·불법 건축물 단속 및 지도계획 수립 6.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사후관리 7. 건축분야 소송 및 진정민원 처리 8. 에어컨(실외기) 관리 9. 재난·재해·위험 건축물 관리 10. 건축관계자 교육 11. 각종 건축관련 제도 시행·홍보 12. 빈집현황 조사·관리 13.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14. 주택개량사업(연100동) 15. 빈집정비 및 철거지원사업(연 150동) 16.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17.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8. 건축물 정기점검 19.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20. 긴급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 21.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22. 건물 해체공사 허가 23. 건축물 관리계획 승인 24. 건축물관리법 운영 25.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장·경비원관리 26. 관리규약관리, 하자담보관리 27.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관리 28.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29. 어린이 놀이터 관리·감독 30. 공동주택 회계감사 31. 공동주택 위법 감독강화 및 처벌 3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	

남해군 공고 제2020-1209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가. 2020년도 기준인건비 국가(지역) 현안수요 반영 및 행정수요 신규 증대분야 인력 보강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수요를 반영한 공무원 정원 조정
- 나. 청사신축추진단(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 반영(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 다. 기준인건비 반영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2명) 별표 표기

3. 주요내용

- 가. 총정원 조정 : 643명 → 657명(증 14명)
- 나.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

구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읍	면
현행	643	354	13	122	19	135
개정	657	367	13	123	19	135
증감	증14	증13	0	증1	0	0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규칙안 제2조)

구 분	계 급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 센터			
총계	당초	643	354	13	68	54	19	135	
	변경	657	367	13	69	54	19	135	
정무직	군 수	1	1						
일반직	소계	당초	613	351	13	68	27	19	135
		변경	627	364	13	69	27	19	135
	4급		4	4					
	5급	당초	33	15	3	1	4	1	9
		변경	34	16	3	1	4	1	9
	6급	당초	151	85	4	8	12	5	37
		변경	170	102	4	10	12	5	37
	7급	당초	167	88	2	34	4	7	32
		변경	167	88	2	34	4	7	32
	8급	당초	153	94	1	21	4	4	29
		변경	177	109	3	21	4	4	36
	9급	당초	104	65	3	4	2	2	28
		변경	74	45	1	3	2	2	21
	전문경력관		1				1		
별정직	별정6급	1	1						
연구직	기록연구사	1	1						
지도직	농촌지도사	27				27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번지) 남해군청 행정과(전화 860-3113,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860-3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This area is intentionally left blank for the submission of comments.)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직속기관, 사업소” 를 “직속기관”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별표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 중 본청의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복지담당 행정직 정원) 남해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정원조례 시행규칙 별표에(괄호)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정원을 규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남해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u>직속기관</u>, <u>사업소</u> 및 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정원은 별표와 같다.</p>	<p>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 ----- <u>직속기관</u> ----- ----- ----- --.</p>

남 해 군 공 보

(50) 제 675 호

2020년 10월 13일

[별표]									
남해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									
직종	계급	직렬	총계	본청	의회 사무 과	직속기관		읍	면
						보건 소	농업 기 술센 터		
총계	합 계		657	367(2)	13	69	54	19	135
	정무직		1	1					
	일반직		627	364(2)	13	69	27	19	135
	별정직		1	1					
	연구직		1	1					
지도직		27				27			
정무직계	군수	정무직	1	1					
일반직계			627	364(2)	13	69	27	19	135
일반직	4급 합계		4	4					
일반직	4급	서기관	2	2					
일반직	4급	서기관·기술서기관	2	2					
일반직	5급 합계		34	16	3	1	4	1	9
일반직	5급	행정	5	4	1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	1	1					
일반직	5급	행정·해양수산	2	1					1
일반직	5급	행정·시설	6	6					
일반직	5급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일반직	5급	행정·농업·시설	1						1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3					1	2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일반직	5급	행정·농업·해양수산·보건	2		1				1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	1						1
일반직	5급	행정·녹지·시설	2						2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시설	2	2					
일반직	5급	행정·환경·시설·녹지	1	1					
일반직	5급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일반직	5급	농업·농촌지도	1				1		
일반직	5급	행정·농업·농촌지도	3				3		
일반직	5급	보건·간호·의료기술·보건진료	1			1			
일반직	6급 합계		170	102	4	10	12	5	37
일반직	6급	행정	24	20	3			1	
일반직	6급	세무	1	1					
일반직	6급	해양수산	4	4					
일반직	6급	보건진료	3			3			
일반직	6급	시설	5	5					
일반직	6급	행정·전산	1	1					
일반직	6급	행정·세무	4	4					
일반직	6급	행정·사회복지	9	9					
일반직	6급	행정·사서	1	1					

일반직	6급	행정·사회복지·전산	7						7
일반직	6급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일반직	6급	행정·농업	11	2					9
일반직	6급	행정·농업·공업	2	2					
일반직	6급	행정·농업·공업·녹지	2	2					
일반직	6급	행정·녹지	1						1
일반직	6급	행정·해양수산	5	5					
일반직	6급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일반직	6급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일반직	6급	행정·보건·환경·농업	1	1					
일반직	6급	행정·보건·환경·공업	1	1					
일반직	6급	행정·시설	23	22					1
일반직	6급	보건·간호·의료기술	5				5		
일반직	6급	행정·농업·수의	1					1	
일반직	6급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	1					1	
일반직	6급	농업·녹지	1	1					
일반직	6급	농업·농촌지도	4					4	
일반직	6급	행정·세무·농업	3						1 2
일반직	6급	행정·세무·농업·보건	1						1
일반직	6급	행정·세무·농업·해양수산	1						1
일반직	6급	행정·세무·시설·해양수산	1						1
일반직	6급	행정·사회복지·보건	6	2					4
일반직	6급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일반직	6급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일반직	6급	행정·농업·녹지	4	4					
일반직	6급	행정·환경	5	5					
일반직	6급	행정·농업·시설	9	4					5
일반직	6급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농업·농촌지도	5					5	
일반직	6급	농업·공업·농촌지도	1					1	
일반직	6급	행정·녹지·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환경·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농업·해양수산	2						2
일반직	6급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전산·농업·방송통신	1					1	
일반직	6급	운전	2	1	1				
일반직	6급	통신운영	1	1					
일반직	6급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일반직	7급	합계	167	88	2	34	4	7	32
일반직	7급	행정	31	21	2			2	6
일반직	7급	세무	6	2				1	3
일반직	7급	사회복지	10	3				1	6
일반직	7급	전산	1	1					
일반직	7급	공업	3	2					1
일반직	7급	해양수산	7	7					
일반직	7급	보건	12				12		
일반직	7급	의료기술	3				3		
일반직	7급	간호	7				7		
일반직	7급	보건진료	9				9		

남 해 군 공 보

(52) 제 675 호

2020년 10월 13일

일반직	7급	환경	1	1					
일반직	7급	시설	9	8			1		
일반직	7급	행정·세무·전산	1	1					
일반직	7급	행정·세무·농업	4	1					3
일반직	7급	행정·전산·농업	1						1
일반직	7급	행정·사회복지	7	3			1		3
일반직	7급	행정·농업	9	2			2		5
일반직	7급	행정·농업·녹지	6	4					2
일반직	7급	행정·농업·수의	1				1		
일반직	7급	행정·보건·의료기술	2			2			
일반직	7급	행정·환경	2	2					
일반직	7급	행정·시설	14	14					
일반직	7급	세무·전산	1	1					
일반직	7급	행정·시설·방송통신	1	1					
일반직	7급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일반직	7급	농업·시설	1						1
일반직	7급	보건·간호	1			1			
일반직	7급	보건·환경	1	1					
일반직	7급	행정·환경·시설	1	1					
일반직	7급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일반직	7급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일반직	7급	행정·녹지·시설	1	1					
일반직	7급	행정·세무·농업·시설	3	1			1		1
일반직	7급	운전	6	6					
일반직	7급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일반직	7급	녹지	1	1					
일반직	8급 합계		177	109	3	21	4	4	36
일반직	8급	행정	34	27	1			1	5
일반직	8급	세무	4	3					1
일반직	8급	사회복지	16	8				1	7
일반직	8급	전산	1	1					
일반직	8급	농업	3				3		
일반직	8급	녹지	2	2					
일반직	8급	해양수산	5	5					
일반직	8급	환경	1	1					
일반직	8급	보건·세무	1	1					
일반직	8급	의료기술	7			7			
일반직	8급	보건진료	6			6			
일반직	8급	시설	11	7					4
일반직	8급	방재안전	1	1					
일반직	8급	행정·세무	6	3					3
일반직	8급	행정·사회복지	9	4				1	4
일반직	8급	행정·농업·시설	14	3			1	1	9
일반직	8급	행정·전산	2	2					
일반직	8급	행정·해양수산·전산	1	1					
일반직	8급	행정·전산·사서	1	1					
일반직	8급	행정·환경	4	3					1
일반직	8급	행정·시설	13	13					
일반직	8급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일반직	8급	행정·시설·공업	1	1					

일반직	8급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	1	1					
일반직	8급	농업·녹지	1	1					
일반직	8급	전산·방송통신	3	3					
일반직	8급	해양수산·시설	1	1					
일반직	8급	보건·간호	8			8			
일반직	8급	행정·보건·환경	3	3					
일반직	8급	운전	6	6					
일반직	8급	숙기	2		2				
일반직	8급	공업	8	6					2
일반직	9급 합계		74	45(2)	1	3	2	2	21
일반직	9급	행정	22	15(2)	1				6
일반직	9급	세무	4	2					2
일반직	9급	사회복지	8	3				1	4
일반직	9급	농업	1				1		
일반직	9급	해양수산	2	2					
일반직	9급	환경	3	3					
일반직	9급	시설	5	2					3
일반직	9급	방재안전	1	1					
일반직	9급	의료기술	1			1			
일반직	9급	행정·시설	8	8					
일반직	9급	행정·세무·전산	2	1					1
일반직	9급	행정·사회복지	3	3					
일반직	9급	행정·해양수산	1	1					
일반직	9급	행정·농업·녹지·공업	7	4					3
일반직	9급	행정·전산·보건	1			1			
일반직	9급	운전	3			1	1		1
일반직	9급	사무운영	2					1	1
일반직	전문경력관 나군	농기계교관	1				1		
별정직계	별정급상당	일반비서	1	1					
연구직계	연구사	기록연구	1	1					
자도직계	지도사	농촌지도	27				27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입.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별표] 남해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									
직렬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수기관		면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합 계	657	367(2)	13	69	54	135	19	135	
정무직	1	1							
일반직	627	364(2)	13	69	27	135	19	135	
별정직	1	1							
연구직	1	1							
지도직	27				27				
정무직계	1								
일반직계	627	364(2)	13	69	27	135	19	135	
4급 합계	4	4							
서기관	2	2							
서기관·기술서기관	2	2							
5급 합계	34	16	3	1	4	9	1	9	
행정	5	4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해양수산	2	1				1			
행정·시설	6	6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3					2	1	2	

현 행									
[별표] 남해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									
직렬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수기관		면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합 계	643	354	13	68	54	135	19	135	
정무직	1	1							
일반직	613	351	13	68	27	135	19	135	
별정직	1	1							
연구직	1	1							
지도직	27				27				
정무직계	1	1							
일반직계	613	351	13	68	27	135	19	135	
4급 합계	4	4							
서기관	2	2							
서기관·기술서기관	2	2							
5급 합계	33	15	3	1	4	9	1	9	
행정	5	4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해양수산	2	1				1			
행정·시설	5	5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3					2	1	2	

농업·시설	1										14	14					
보건·간호	1						1				1	1					
보건·환경	1										1	1					
행정·환경·시설	1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복지·시설	1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3					1		1			3	1					
윤전	6	6									6	6					
전기운영·기계운영	2				1						1	1					
복지	1										1	1					
8급 합계	153	94	1	21	4	4	4	29			177	109	3	21	4	4	26
행정	31	24	1				1	5			6	6					
세무	4	3						1			1						
사회복지	16	8					1	7			1	1					
전산	1	1									1	1					
농업	3								3		31	27	1				5
복지	2	2									4	3					1
해양수산	5	5									16	8					7
환경	1	1									1	1					
보건·세무	1	1									3						3
의료기술	7										2	2					
보건진료	6										5	5					
시설	11	7						4			1	1					
방재안전	1	1									1	1					
행정·세무	5	2									7						7
행정·사회복지	7	2									6						6

행정·농업·시설	6	2	2	1	1	2	11	7				4
행정·전산	2	2					1	1				
행정·해양수산·전산	1	1					6	3				3
행정·전산·사서	1	1					9	4			1	4
행정·환경	4	3				1	14	3			1	9
행정·시설	11	11					2	2				
행정·사회복지·복지·시설	1	1					1	1				
농업·복지	1	1					1	1				
전산·방송통신	2	2					4	3				1
해양수산·시설	1	1					13	13				
보건·간호	8					8	1	1				
행정·보건·환경	3	3					1	1				
운전	5	5					1	1				
공업	6	4					1	1				
9급 합계	104	65	3	4	2	2	74	45(2)	1	3	2	21
행정	31	22	1				1	1				
세무	4	2					8			8		
사회복지	12	5				1	3	3				
숙기	2		2				6	6				
농업	2					1	2		2			
해양수산	3	3					8	6				2
환경	3	3					74	45(2)	1	3	2	21
시설	5	2				3	22	15(2)	1			6
방재안전	1	1					4	2				2
의료기술	1					1	8	3			1	4
행정·전산	1	1					1				1	
행정·시설	9	9					2	2				

전산·방송통신	1	1	1						환경								
행정·세무·전산	4	3							시설								3
행정·사회복지	5	5							방재안전								
행정·해양수산	1	1							의료기술						1		
행정·농업·복지	7	4							행정·시설								
행정·전산·보건	1			1					행정·세무·전산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								
안전	5	1		2	1				행정·해양수산								
사무운영	4						1		행정·농업·복지·공업								3
공업	1	1							행정·전산·보건								
농기계교관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일반비서	1	1							안전						1	1	1
기록연구	1	1							사무운영								1
농촌지도	27						27		농기계교관								
									일반비서								
									기록연구								
									농촌지도								27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에 담당하는 정원 수임.

남해군 공고 제2020-1210호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남 해 군 수

1. 개정 이유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의 권익을 저해하는 자치법규를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에 따라 기존 “읍·면사무소” 로 되어 있던 명칭을 “읍·면 행정복지센터” 로 변경(안 제1조 ~ 제6조)
- 나.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던 자치법규를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인용하도록 개정(안 제7조 ~ 제14조)
-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명칭 변경(안 제8조, 제15조 ~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26일까지 남해군수(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udghkzzz@korea.kr

2) 주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3) 팩스 : 055-860-370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기획예산담당관(전화 : 055-860-30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아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6조제4항 중 “읍·면사무소”를 각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2조(「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읍·면의 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3조(「남해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읍·면의 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위치”로 한다.

제4조(「남해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남해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읍면사무소”를 각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의”로 한다.

제5조(「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6조(「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사무소” 를 “행정복지센터” 로 한다.

제7조(「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남해군 재무회계규칙」” 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8조(「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 를 “감정평가법인등” 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9조(「남해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0조(「남해군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전단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1조(「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2조(「남해군 건축 조례」의 개정)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3조(「남해군 지하수 조례」의 개정) 남해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4조(「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5조(「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 를 “감정평가법인등” 으로 한다.

제16조(「남해군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단서 중 “감정업” 을 “감정평가업” 으로 한다.

제17조(「남해군 어항관리 조례」의 개정) 남해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으로 한다.

제18조(「남해군 주차장 조례」의 개정)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를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를 각각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p>제4조(설치등) ①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 ③ (생 략)</p> <p>④ 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4조(설치등) ① ----- 읍·면 행정복지센터-----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읍·면 행정복지센터----- ----- ----- ----- .</p>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p>제16조(설치)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p>	<p>제16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읍·면 행정복지센터----- ----- ----- .</p>

현 행	개 정 안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군, 읍·면의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p> <p>2. ~ 7. (생 략)</p>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 ----- -----.</p> <p>1. --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위치 -----</p> <p>2. ~ 7. (현행과 같음)</p>
남해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p style="text-align: center;"><u>남해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남해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사무소 소재지) 남해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남해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 -----.</p> <p>제2조(사무소 소재지) ----- 읍·면 행정복지센터-----.</p>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p>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군수는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 관련 기관, 읍·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p>	<p>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 ----- ----- 읍·면 행정복지센터 ----- -----.</p>

현 행	개 정 안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② (생략) ③ 지원본부는 군 및 읍·면 <u>주사무소</u> 안에 둔다. ④ ~ ⑧ (생략)	제7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행정복지센터</u> ----- ④ ~ ⑧ (현행과 같음)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원인자 부담)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남해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의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한다.	제8조의2(원인자 부담) ----- ----- ----- ---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 ③ (생략)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u>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u> ,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감정평가법인등</u> ----- ----- -----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현 행	개 정 안
남해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수익금 납부) 영화관 관람료 및 매점 수익금, 대관료 등의 처리는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수익금 납부) ----- -----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제25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② (생략) ③ 이행보증금은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납입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서는 허가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보증이어야 한다.	제25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 -----.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준용) 마을공동시설 지원사업의 계약과 시행, 보조금의 집행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준용) ----- ----- ----- -----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남해군 건축 조례	
제21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등) ① ~ ⑤ (생략)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및 반환 절차는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현 행	개 정 안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남해군 지하수 조례	
<p>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 ~ ④ (생 략)</p> <p>⑤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남해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p> <p>⑥ (생 략)</p>	<p>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p> <p>⑥ (현행과 같음)</p>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p>제10조(회계 및 결산) ①·② (생 략)</p> <p>③ 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0조(회계 및 결산)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p>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p>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u>감정평가업자</u>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p> <p>2. ~ 8. (생 략)</p>	<p>제4조(기능) ----- -----.</p> <p>1. <u>감정평가법인등</u>----- -----</p> <p>2. ~ 8.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p>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생략)</p> <p>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u>감정업</u>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p> <p>⑤ ~ ⑧ (생략)</p>	<p>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u>감정평가업</u> ----- ----- -----.</p> <p>⑤ ~ ⑧ (현행과 같음)</p>
남해군 어항관리 조례	
<p>제26조(점·사용료의 산정)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u>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u>」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당해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u>국유재산법 시행규칙</u>」 제19조에 따라 산정한다.</p> <p>③ (생략)</p>	<p>제26조(점·사용료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u>」 제3조제1항----- ----- ----- ----- ----- ----- -----.</p> <p>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남해군 주차장 조례	
<p>제19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p> <p>① (생 략)</p> <p>②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p> <p>1. 2. (생 략)</p> <p>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p> <p>4. (생 략)</p> <p>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p> <p>1. 2. (생 략)</p>	<p>제19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 -----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p> <p>4. (현행과 같음)</p> <p>③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생략)</p> <p>④ (생략)</p>	<p>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 -----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p> <p>4.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남해군 공고 제2020-1212호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부실한 지방자치조례의 정비
(2015년 이후 주요 토의안건이 없어 위원회 개최가 전혀 없음)
 - 조례에는 위원회 운영이 명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건설사업체와 간담회 형태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함으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회의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이 없고 위원회 회의가 과거 5년 이상 실적이 없으므로 조례 전문(제1조부터 제19조)을 폐지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이 자치법규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442, 팩스 055-860-3708
이메일 kwsswk@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전화 055-860-34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견 제 출 자	성 명 (명 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